

광주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나539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화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9.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845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4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징크가공기계를 반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공사재개 후 자재 및 징크가공기계 반입에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 충당 목적을 고지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는 소극적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위 4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1. 6. 5. 협의 당시 피고가 징크가공기계 등을 반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재개를 위해 필요한 돈 4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를 다시 중단하고 기계 반입을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약정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1. 6. 5. 협의 당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C과 화순군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약정에 기한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12. 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약정을 해제하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50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21. 6. 5. 협의 당시 징크가공기계 반입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3,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1. 6. 5. 협의는 피고가 C의 선급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C의 요청에 따라 원고, C,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협의 당시 공사재개를 위한 자금 지원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논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② 이와 같은 2021. 6. 5. 협의 체결 경위에 더하여, C이 원고에게 4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준 점과 40,000,000원에 대한 향후 정산 논의내용 등을 고려하면 4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인데 당장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재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 원고로서는 징크가공기계의 반입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원고는 C을 인수할 목적이 있었던바,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이를 위한 금전 지원이 원고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일부 자재를 반입하였고, 다만, C이 약속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다시 공사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1. 6. 5. 협의 당시 40,000,000원을 공사재개 후 자재 및 징크가공기계 반입에만 사용할 것처럼 그 용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속였다거나 나아가 원고가 이에 속아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피고가 40,000,000원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원고가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명백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2021. 6. 25. C의 I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애초에 40,000,000원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피고의 위 압류명령으로 인해 C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편취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압류는 C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약정 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이외의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이미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약정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등 참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6. 5.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그 논의내용 등을 종합하면, 2021. 6. 5. 협의는 C의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미이행 등을 이유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원고가 C을 대신하여 일단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 피고 사이에 피고가 반드시 징크가공기계를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또는 이 사건 공사를 무조건적으로 마칠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21. 6. 5. 협의 당시 C에서 2021. 6. 8.경까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내용을 함께 논의한 사실, 피고가 2021. 6. 5. 협의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C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표 E이 2021. 6. 11. 피고와 통화하면서 2021. 6. 15.까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겠다고 다시 약속한 사실, 그러나 2021. 6. 15.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2021. 6. 16.경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2021. 6. 5. 협의에서 정한 자신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는 C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 달리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협의의 조건 내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약정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피고가 2021. 6. 5. 협의에서 정한 조건 내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피고가 2021. 6. 5. 협의 당시의 약정을 불이행하던 중 C과 화순군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의 약정의무의 이행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아, 판사 김성흠, 판사 김효진